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7 - 04 - 025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의 결 일 2017. 1. 26.

주 문

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도난·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도난·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2017. 3. 31.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분유 등 식품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년 매출액은 약 . . . '15년 상시 종업원 수는 --- 이고 저장·관리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100만명 이상이다.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대상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이 해커 검거 후 해커가 개인정보 구매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취득을 요청받은 사이트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여부

확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2015.3.3.)해 오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5.8.11.~2015.8.12.)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인 택배사, 결제대행사 등 84개 업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였고, 위탁한 업무의 내용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였으므로, 적어도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

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피심인은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임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하지 않았다.

다.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 12.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6. 12. 19.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제1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제2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제25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

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제3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6항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인 택배사, 결제대행사 등 84개 업

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였고, 위탁한 업무의 내용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였으므로, 적어도 수탁자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택배사, 결제대행사 등 84개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피심인은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임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및 고시 제4조제6항을 위반하였다.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수탁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

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도난·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도난·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2017. 3. 31.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제2항 및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및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각각 1회 위반 과태료인 600만원 및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 제2항제1호	600	1,200	2,000
○ 법 제28조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처리지침’ 제9조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1개이나, 위반 행위자의 ‘15년 전체 매출액이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인 500만 원을 가중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처리지침’ 제8조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위 두 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의 경우 각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업 규모가 영세하지 않는 등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감경하지 않는다.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과태료 가중	과태료 감경	최종 과태료
§25②	600만원	없음	없음	600만원
§28①2호	1,000만원	500만원	없음	1,500만원
계				2,100만원

4.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경우,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이 해커 검거 후 해커가 개인정보 구매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취득을 요청받은 사이트 등에 해당하여 조사한 것으로, 실제 해킹으로 인한 유출 사실은 없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제76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장

최 성 준



부위원장

김 재 홍



위원

김 석 진



위원

이 기 주



위원

고 삼 석

